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을 “법 제47조의2제10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머목부터 서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500	750	1000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서.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 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 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 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 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 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 리·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 한다)의 설치·운영자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 식소의 설치·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 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 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 우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500	750	1000
		400	600	800
		300	400	500
		300	400	500
		300	400	500
		300	400	500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7)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300	400	500	
8)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	400	600	800	
9)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한 경우	300	400	500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는 등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500	750	1000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법 제101조 제3항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 머목, 버목 및 서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u>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u>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u>법 제47조의2제10항</u>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